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민의 권리 보장 및 공공농업 실현 〉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55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총괄 검토의견	5
1. 법 제정 필요성	5
2. 전부개정안의 체계	15
V. 조문별 검토	21
1. 제명 및 총칙(안 제1장)	21
2. 농민의 권리(안 제2장)	35
3.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원칙(안 제3장)	48
4.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시행(안 제4장)	54
가. 제1절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54
나. 제2절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65
다. 제3절 건강한 농산물 공급	72
라. 제4절 농민의 양성 및 농업종사자 확충	77
마. 제5절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민의 적정소득 보장	87
바. 제6절 농지의 보전과 확충	95
사. 제7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8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106
아. 제9절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 적응	113
자. 제10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농촌주민의 권리 보장	117
차. 제11절 통일 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과 국제협력	131
5.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등(안 제5장)	136
6. 보칙(안 제6장)	138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전종덕의원 등 15인
2. 제 출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식량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하고 있고, 이상기온을 비롯한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식량 대란을 예고하는 등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국가는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한편,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농업과 먹거리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였음.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는 농촌지역 공동화로 이어져 사회적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힘들

고 각종 생활서비스 공급이 감소하여 농촌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민권리선언이 명시한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에서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에서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산물의 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 가족을 농민이라 함(안 제3조제2호).

다. 농민은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짐(안 제7조).

라. 농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 위해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하며 적절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모든 사람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2조).

아. 국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생산비와 농민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68조).

차.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보·보존되고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69조).

카. 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수립 시 농업의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여건 변화 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5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허가할 경우 해당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지를 보전하며 주민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수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6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업·농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함(안 제10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출산, 노인질환, 농약 중독,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한 농촌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11조).

IV. 총괄 검토의견

1. 법 제정 필요성

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전부개정안은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① 농민의 권리 신설, ② 식량자급률 제고, ③ 농민의 소득 보장, ④ 농지의 보전·확충 강화 ⑤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⑥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규정하면서, 각 사항에 국가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여 농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전부개정안의 구성]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농민의 권리
제3장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기본방향
제4장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시행
제1절 농민·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절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제3절 건강한 농산물 공급
제4절 농민의 양성 및 농업 종사자 확충
제5절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
제6절 농지의 보전과 확충
제7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8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9절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 적응
제10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농촌주민의 권리 보장
제11절 통일 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과 국제협력
제5장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등
제6장 보칙

나.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업 소득 불안정,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환경 악화, 국제적 농산물 경쟁 심화 등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른 식량자급률 저하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임.

첫째,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22.1%에서 2023년 25.7%로 증가하여, 도시지역의 고령화율 2019년 13.5%, 2023년 16.9%에 비해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농촌 및 도시지역 고령화율 변화(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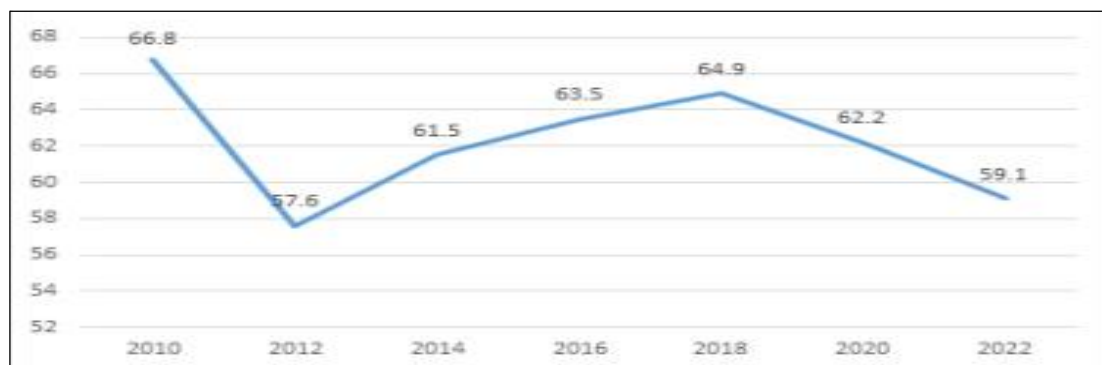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촌(읍면)	22.1	23.0	24.0	25.0	25.7
도시지역	13.5	14.4	15.2	16.0	16.9
국가 전체	15.1	16.0	16.8	17.7	18.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보다 연간 3,200만원 적으며, 시계열적으로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이 2010년 66.8%에서 2022년 59.1%로 격차가 벌어졌음.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



※자료: 위기와 기회의 농업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경기연구원, 23.5.), 202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셋째, 우리나라는 현재 FTA 22건, 59개국과 발효되는 등 시장 개방 확대와 그로 인한 국제적 농산물 경쟁 심화에 노출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연번	상대국	발효	의의
1	칠레	2004.4.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2	싱가포르	2006.3.	ASEAN 시장 교두보
3	EFTA(4개국)	2006.9.	유럽시장 교두보
4	아세안(10개국)	2007.6.(상품), 2009.5.(서비스), 2009.9.(투자)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5	인도	2010.1.	BRICs 국가, 거대시장
6	EU(27개국)	2015.12.13.	거대 선진경제권
7	페루	2011.8.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8	미국	2012.3.15., 2019.1.1.(개정협정서)	세계 최대경제권(GDP 기준)
9	튀르키예	2013.5.1.(기본-상품), 2018.8.1.(서비스-투자)	유럽-중아시아 진출 교두보
10	호주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1	캐나다	2015.1.1.	북미 선진시장
12	중국	2015.12.20.	우리의 제1 교역국(2022년 기준)
13	뉴질랜드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4	베트남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 대상국 (2019년 기준)
15	콜롬비아	2016.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16	중미(5개국)	2021.3.1.	중미 신시장 진출
17	영국	2021.1.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18	RCEP	2022.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19	이스라엘	2022.12.1.	창업국가 성장모델
20	캄보디아	2022.12.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21	인도네시아	2023.1.1.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22	필리핀	2024.12.31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자료: 관세청 FTA 포털(2024. 12. 기준)

넷째, 식량자급률¹⁾ 역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 측면에서 식량자급률의 향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연도별 식량자급률 실적]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식량자급률 (식용곡물)	54.1	51.9	50.3	49.3	49.3	44.1	49.4
(쌀 제외시)	19.5	17.8	19.0	19.6	19.7	18.7	1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식량자급률: 사료용 소비·수출·원조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

다. 제21대 국회 논의경과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청원이 2차례 제출된 바 있음.

[제21대 제출 청원 주요내용]

의안번호 청원명	발의일 청원유형 청원인	주요내용	
2100171 농민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	2023-11-21, 의원소개 청원 (강성희의원) 하원오	식량자급률 100%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식량 자급률의 공극적 목표를 100%로 설정하고, 매년 대책 수립과 실행을 책임 있게 진행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주요 농산물의 50% 이상은 계약재배를 통해 적정가격 유지 및 생산량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수급제 실시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농민이 농산물 가격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결정위원회' 구성
		농지확보	농지가 농업생산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전용 및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농지관리를 책임지는 농지관리청 신설
		농민등록제 신설	가짜농민 양산, 진짜 농민 제외 등의 문제가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폐지하고, 농민계층 다양화로 인한 농민의 관리와 영농의 규모 및 영농방식 등을 확인하는 농민 등록제 신설
		농민수당법 제정	농업 생산만으로 농민의 삶을 영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인 농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상으로서 농민수당 지급
		농어촌 주민 권리보장특별법 제정	풍력,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농어촌 파고를 즉각 중단하고, 농어촌지역 보존 및 주민의 권리 보장
2100072 농업·농촌·농민기 본법에 관한 청원	(2022-01-19, 국민동의 청원 박흥식 외 50,000명	농민의 날 지정	동학농민혁명기념일(5.11.)을 농민의 날로 지정
		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 ②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권리 실현 ③ 식량의 공공재적 성격 규정 ④ 식량자급률 법제화 ⑤ 농지공공성 강화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라. 국제동향

한편, 국제적으로는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UN은 2018년 12월 17일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하 ‘UN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음.

동 선언은 국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정부에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적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UN 농민권리선언 주요내용(요약)]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1. 취지 및 배경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 기아, 영양실조,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권리 침해 및 차별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선언이 채택됨.

농민 및 농촌 종사자의 인권 증진,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 토지와 자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함.

2. 주요 권리

- 기본권 및 차별 금지: 농민은 출신, 성별, 언어, 재산,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여성의 권리 강화: 여성 농민이 토지, 금융, 교육, 사회보장 등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명시.
- 토지와 자원 접근권: 농민은 토지, 물, 종자 등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권리와 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사회보장과 건강권: 농민은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보장,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짐.
- 문화적 권리: 농민은 자신들의 전통 지식, 관습,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음.

3. 국가의 의무

각국은 농민의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할 의무가 있음.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농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함.

국제협력을 통해 농민의 권리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함.

4. 특별 조항

농민의 종자권,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먹거리 물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등이 강조됨.

강제이주 금지 및 공정한 보상 제공,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대응 등이 포함됨.

마. 총괄 검토의견

전부개정안은 상기와 같은 농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촉구 동향과 ‘UN 농민권리선언’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국가와 사회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UN 농민권리선언문과 전부개정안의 유사 조항 비교]

구분	UN 농민권리선언문	전부개정안
식량주권	○ 농민의 식량 생산권을 포함한 먹거리 접근권과 먹거리 및 농업체계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 등의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제15조)	○ 농민의 식량 생산권, 생산방법 결정권,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권(안 제7조)
종자권	○ 농민에 대한 다음의 종자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등의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제9조) - 식물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보호할 권리 -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 공유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 -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 또는 번식물질을 보관, 활용, 교환 및 판매할 권리	○ 농민에 대해 ① 자기 보유 종자 및 관련 지식을 보존하고 ② 활용에 따르는 이익을 공유하며 ③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의 보관·활용·판매 등의 종자권 인정(안 제8조)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에 대한 관리	○ 국가는 유전자조작 유기체의 개발, 처리 운송, 활용, 이송 또는 유포로 인해 농민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 요소를 예방할 의무를 인정(제20조)	○ 국가 등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 방출로 인한 농민과 농촌주민의 건강권 침해, 토종동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의 발생예방 및 피해복구 정책 수립·시행 의무 인정(안 제10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의 “농업인”을 대체하는 “농민” 개념을 신설하고, 농업종사자와 함께 농촌에서 거주하는 가족 등을 농민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개별법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공익직불제 등의 정책대상에 변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농민의 용어신설 및 대상 범위변경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경자유전 원칙 실현²⁾, 식량안보 등을 위한 농지 소유 제한 등의 농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규제에 대하여는 식량생산기반 보전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지규제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농민 소득보장 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³⁾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수당 등의 농가당 기본소득(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2) 헌법 제121조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달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 투기 방지 등을 위한 농지 규제는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3)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는 기존의 ‘쌀 중심 직불제’가 개편된 것으로 농업·농촌이 단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 지급 등을 통하여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도 적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려는 목적의 제도임(「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내용】

개정안의 추가적인 소득 보장 제도 도입에 대한 판단은 현재 운영되는 공익직불제도, 기초연금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수당 외에도 추가로 농민에게 다층적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동 기본법의 체계·개념을 전부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체계 전반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이에 기반하여 ① 농업 분야 개별법은 「농지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② 농촌 분야 개별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③ 식품 분야 개별법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음.

개편 전		개편 후		개편후 직불금 내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① 기본 직불 제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2024년 기준)
쌀소득보전직불제 : 고정, 변동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발농업 직불제 : 고정, 논이모작		② 선택 직불 제	경 관 보 전 직 불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라 추가로 발생 하는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 여 지급
친 환경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 환경 농 업 직 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 환경 축 산 직 불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 이 보전
			전 략 작 물 직 불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에 전 략 작 물 재 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과, 2024.8.4.)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

4)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은 이미 농어업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을 할 것인지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부개정안은 일부 조문이 다른 개별법과 충돌·중복 여지가 있고, 식품 및 식품산업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정책적 근거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법률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 체계 전반에 대한 고려와 다각적 검토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과 기존 법률 충돌·중복 우려 사항]

전부개정안	충돌·중복 우려가 있는 현행법
제4조(국가지자체·농민·소비자 등 책임)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8조(종자권)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9조(안전하게 농사지을 권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제11조(물에 대한 권리)	「물관리기본법」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제9조(물관리 정책 참여),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12조(농산물 가공권)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13조(농업노동자의 권리)	「고용보험법」
제14조(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38조(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계약재배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43조(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관리)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등
제44조(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와 관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제58조(농업 인력 확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51조(여성농민에 대한 동등 대우), 제52조(여성농민의 평등권 보장)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제67조(공익 직접지불제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제78조(농지위원회)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제96조(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의 원칙)	「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 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99조(조건불리지역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10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등
제103조(골재채취 허가 제한)	「골재채취법」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등
제104조(산업시설의 환경영향 등으로 인한 농업 및 농촌 피해 예방조치 등)	「환경보건법」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제106조(도시농업의 육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료서비스 확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등
제112조(농촌 거주 노인에 대한 돌봄 체계 확립)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113조(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5조(남북 농업협력 및 농산물 교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돌·중복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개정안보다는 「고용보험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 체계 내에서 일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편,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및 식품산업 내용을 삭제하고, “농업인”을 “농민”으로 대체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① 관련 법령들과 충돌, ② 추진 중인 제도·사업의 지원 근거 상실, ③ 기존 농업인 인정범위 축소·확장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2. 전부개정안의 체계

전부개정안은 총 6장 12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시행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농민의 권리, 제3장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기본방향, 제4장 농민·농업·농촌 정책 정책의 수립시행, 제5장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등, 제6장 보칙으로 구분됨.

개정안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나, 농민의 권리 규율하는 제2장을 신설하고,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등의 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제5장에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현행법 체계와 차이가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안의 체계]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개정
제2조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개정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개정
제4조 국가·지자체·농업인·소비자 등 책임	제4조 국가·지자체·농민·소비자 등 책임	개정
제4조의2 농업인의 날	제5조 농민의 날	개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제2장 농민의 권리	
-	제7조 농민의 식량주권	신설
-	제8조 종자권	신설
-	제9조 안전하게 농사지을 권리	신설
-	제10조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	신설
-	제11조 물에 대한 권리	신설
-	제12조 농산물 가공권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	제13조 농업노동자의 권리	신설
-	제14조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	신설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3장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15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개정
-	제16조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 달성	신설
-	제17조 농민의 적절한 소득 보장	신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삭제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개정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	삭제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9조 농촌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전부 개정
-	제20조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신설
-	제21조 주민자치조직	신설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22조 농업 관련 단체의 육성	개정
제12조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23조 통일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	개정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제24조 통상 및 국제협력	개정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제4장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시행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절 농민·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현행 제14조제3항 내용 일부 개정)	제25조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제15조 정책심의회	제26조 식량자급률	개정
-	제27조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개정
- (현행 제15조제1~3항 내용 일부 개정)	제2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제29조 지역·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신설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제30조 기본계획의 추진	개정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31조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연차 보고서 등	개정
-	제32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개정
	제2절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현행	개정안	비고
-	제33조 식량주권	신설
-	제34조 국가 식량자급 목표 등	신설
-	제35조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 등	신설
-	제36조 이행현황의 점검 및 보완계획 수립 등	신설
-	제37조 우선 구매 요청	신설
-	제38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계약재배 등	신설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39조 식량의 안정적 공급	개정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3절 건강한 농산물 공급	
-	제40조 참여인증체계	신설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41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개정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제42조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개정
- (내용은 현행 제20조제3항 + 추가 신설)	제43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관리	개정
-	제44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와 관리 등	신설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제45조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개정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	삭제
제23조의2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	삭제
제23조의3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제23조의4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제46조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등	개정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4절 농민의 양성 및 농업 종사자 확충	
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제47조 가족농 지원	개정
- (현행 제24조제2항을 전부 개정)	제48조 농업 종사자의 양성	개정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49조 후계농민의 육성	개정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제50조 전업농민의 육성	개정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제51조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 대우	개정
제54조의2 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제52조 여성농민의 평등권 보장	개정
-	제53조 가족농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 보장	신설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54조 농민 등의 법인 설립 지원	개정
-	제55조 기존 농업법인의 전환 촉진	신설
제29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56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29조의2 귀농업인의 육성 -	제57조 귀농인의 육성 제58조 농업 인력 확보	개정 신설
-	제5절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	
제42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59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개정
제41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	제60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제61조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개정 신설
-	제62조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의 공정가격 설정	신설
-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안정조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신설
-	제64조 농업생산비용 경감 지원	신설
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제65조 농산물의 유통개선 제66조 공정가격 범위 설정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권 보장	개정 신설
-	제67조 공익 직접지불제도	신설
-	제68조 농민수당 등	신설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6절 농지의 보전과 확충	
제30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제69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개정
제31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	제70조 경자유전의 원칙 제71조 농민 등의 농지 소유	개정 신설
-	제72조 예외적 농지 소유 허용	신설
-	제73조 농지의 이용 증진 및 공공농지의 확보	신설
-	제74조 농지임차인 등 보호	신설
제32조 농지의 보전 -	제75조 농지의 보전과 확충 제76조 농지전용 등 제한	개정 신설
-	제77조 농지관리청	신설
-	제78조 농지위원회	신설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7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3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79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개정
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제80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개정
제35조 농업 및 식품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81조 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36조 농업 및 식품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제82조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개정
제36조의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	제83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육성	개정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84조 토종종자와 전통 농법 등의 공유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개정
제38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제85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개정
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86조 농민과 농업법인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개정
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제87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개정
제40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88조 농민 및 농업법인의 정보 등록	개정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제89조 치유농업의 진흥	현행과 동일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8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4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제90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현행과 동일
제45조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제91조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현행과 동일
제46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제92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개정
-	제9절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 적응	
제47조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제93조 기후위기 대응 등	개정
제47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제94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현행과 동일
-	제95조 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신설
-	제96조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의 원칙	신설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10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농촌주민의 권리 보장	
제48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97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개정
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98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현행과 동일
제49조의2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제99조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개정
제50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100조 농촌 지역 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전부 개정
- (현행 제50조제2항을 일부 개정)	제101조 농촌주민 등에 대한 교육	개정
-	제10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신설
-	제103조 골재채취 허가 제한	신설
-	제104조 산업시설 환경영향 등으로 인한 농업 및 농촌 피해 예방 조치 등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51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제105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106조 도시농업의 육성	현행과 동일 신설
제52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107조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	개정
제52조의2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08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개정
제53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109조 농촌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과 농촌 출신 학생에 대한 지원	개정
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 -	제110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11조 의료서비스 확충 제112조 농촌 거주 노인에 대한 돌봄 체계 확립 제113조 다문화 가족 지원	개정 신설 신설 신설
제8절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11절 통일 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과 국제협력	
제55조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	제114조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제115조 남북 농업협력 및 농산물 교류	개정 신설
제5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	제116조 농업 부문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제117조 농업 부문 통상조약 체결 시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개정 신설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제118조 농민·농업·농촌 분야의 국제협력	개정
제58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삭제
제59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제119조 농산물의 수출 진흥	개정
제60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120조 농산물의 수입 관리	개정
-	제5장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등	
제11조의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1조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개정
제63조의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제122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개정
제4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123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현행과 동일
제62조 조세의 감면	제124조 조세의 감면	개정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개정

* 현행법 조문 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안 조문 순서를 기준으로 유사 내용에 맞게 순서를 조정함

V. 조문별 검토

1. 제명 및 총칙(안 제1장)

가. 제명, 목적 및 기본이념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제명을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민·농업·농촌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u> 제1조(목적) <u>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기본이념) <u>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신설></u> 2. <u>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u>	<u>「농민·농업·농촌 기본법」</u> 제1조(목적) <u>이 법은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하여 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에서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기본이념) <u>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국가는 농민의 권리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며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농정을 수행하며, 농업의 안정적 지속을 위하여 공공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한다.</u> 2. <u>농민은 식량 생산 주체로서 농민의 권리를 누리며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키며 평등을 실현하는 농촌공동체</u>

현행	개정안
다. 1. <u>농업</u>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u>경제적·공익적</u>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3. <u>농촌</u>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u>산업 및 생활 공간</u>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u>구성원으로</u>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u>농업</u>은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 ----- ----- ----- <u>공익적</u> ----- ----- ----- ----- . 4. <u>농촌</u>은 <u>농촌주민이 도시와 동등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춘 생활 공간</u>이자 <u>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 기반</u>,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u>공익공간</u>으로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먼저, 제명은 ① 농민을 가장 앞에 규정하여 이 법이 농민의 권리와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을 밝히려는 취지이고, ② 식품산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이 법에서는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되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로 파악됨.⁵⁾

이와 같은 법 제명은 개정안이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법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현행의 ‘농업인’을 ‘농민’으로 대체하여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과 식품산업을 삭제하는 것은 연관 법령 및 관련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총체적 검토가 필요함.

다음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농민의 권리, 안정된 소득 보장, 농

5)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2025. 3.) : 농민과 농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농민이 맨 앞에”, “식품 관련 내용은 ‘먹거리 기본법’으로 분리”(「농민기본법의 내용과 체계」,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도모, 농촌주민의 삶의 질 및 평등 증진이라는 이 법 전반에 관한 지향점과 개정안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기술하는 내용이나,

기본이념에서 ‘국가책임농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의 보장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가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기본적 질서 하에서 예외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⁶⁾을 고려할 때, 농업 및 농촌 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나 개입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정의

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농업’, ‘농민’, ‘농업법인’, ‘농업노동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농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체류자격에

6) 홍성방, 헌법과 경제질서, 서강법학연구 제5권, 2003, 42쪽.

현행	개정안
3. <u>"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u> <신설> 4. <u>"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u> 5. <u>"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u>	<u>관계없이 이 법상 농민으로 본다.</u> 가. <u>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6호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나. <u>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제7호의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u> 다. <u>농촌 지역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활용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u> 라. <u>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u> 3. <u>"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u> 4. <u>"농업노동자"란 제2호가목·나목의 사람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농업 또는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u> 5. ----- <u>농민의</u>-----<u>농민</u>-----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마. 생태계의 보전 <신 설>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7.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8. ----- ----- -----. 가.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촉진 나.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대 다. 기후위기 대응 기여 라. (현행 나목과 같음) 마. 수자원의 형성과 유지 바. (현행 라목과 같음) 사. 전통농업에 기반한 고유한 지식과 문화의 보전

안 제3조(정의)의 주요 변경사항은 ① ‘농업인’을 ‘농민’으로 대체하면서 포함 대상을 변경하고, ②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괄하는 용어인 ‘농업경영체’를 삭제하고, ‘농민’과 ‘농업법인’으로 각각 규정, ③ ‘농업노동자’의 개념 신설, ④ 식품 및 식품산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① “농업인” 개념을 “농민”으로 대체

현행법은 정책 대상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림분야 개별 법률⁷⁾도 현행법에 따른 농업인을 정책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현행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현행법 및 관련정책은 ‘농업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농지 구입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 관련 보조(직불제 포함)·융자사업 지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농업인 수당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민 부채경감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농어업인 복지지원(예시)]

구분	대상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농촌 및 준농촌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업인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차등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 농업인	- 기초소득금액 이하: 보험료의 50%(정률) - 기초소득금액 초과: 월 46,350원(정액)
농업인 자녀 등 장학금 지원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생	소득분위 구간(0~8구간)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50만원~전액)
영농도우미 지원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 또는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1일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 국고지원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대상 국고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50% 지원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70% 지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세제혜택(예시)]

구분	종류	주요 내용(해당법령)
국세	양도소득세	8년 이상(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의 경우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9)
	부가가치세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①5,6)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조특법 §105의2)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조특법 §106②9)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
지방세	농특세	농지 등에 대한 국세·지방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4)
	취득세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6①)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6④)
	재산세	농지연금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지특법 §35의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현행 농지면적, 판매액 및 종사일수를 기준으로 한 농업인의 요건에 따르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지소유의 명의자가 아니거나 소득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농업인’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⁸⁾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업인’에 비하여 농민을 폭넓게 정의하려는 취지⁹⁾로,

8) 「농민기본법, 우리 모두를 위한 농업대개혁」(국민입법센터, 2022)

9) 농민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2025.3.31. 이원택·문금주·이병진·양문석·임미애·전종덕의원,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공동주최), 「농민기본법의 내용과 체계」(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① 농지면적·연간 판매액·종사일수 요건을 삭제하고, ② 농업·농촌 관련 종사자 포함, ③ 농민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포함, ④ 체류자격과 무관한 외국인까지 농민에 포함하고 있음.

[농업인(현행법)과 농민(개정안)의 요건 비교]

농업인(현행)		요건 (하나라도 충족 하면 인정)	농민(개정안)	
법률	대통령령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 면적	<삭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포괄적으로 규정)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 ① 세대원 총 면적 1천제곱미 터 미만 + ② 비판매목적 + ③ 농촌지역 비거주
	120만원 이상	연간 판매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일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	농산물 출하· 유통·가공·수 출·판매 관련 종사자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수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농촌 거주 요건 신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1년이상 고용 요건 삭제	
	<불포함>	기타 농촌 지역 종사자	<신설>	농촌 지역에서 농업·농촌의 다 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활용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불포함>	가족	<신설>	위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 족으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불포함>	외국인	<신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무관)

그러나 이처럼 정책대상을 확대한 ‘농민’의 개념으로 기존의 ‘농업인’을 대체할 경우, 앞서 살펴본 현행법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농업인 복지지원, 세제혜택 및 공익직불제 등)의 대상 변경과 재정의 추가적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과도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법률의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실정적 개념을 사전적 의미(‘농사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¹⁰⁾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하여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농업경영체’ 정의 삭제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각종 정책대상의 기본적 단위¹¹⁾가 되고 있는데, 부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발생하여 농업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¹²⁾되고 있음.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괄하는 용어인 “농업경영체”를 삭제하고, ‘농민’과 ‘농업법인’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가족 등이 포함되는 ‘농민’과 그 밖에 법인으로 ‘농업법인’을 이 법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파악됨.¹³⁾

이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 관련법¹⁴⁾들이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관련 개별법 체계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1)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2) 예를 들면, 부업을 갖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없어 공익직불금 등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13)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소병훈·어기구·이원택·강은미·강성희의원 주최, 2023.11.)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③ ‘농업노동자’의 정의

안 제4호는 농업노동자를 농민과 농업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¹⁵⁾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농업 경영주도 농민에 포함되므로 농업노동자에 해당하는데, 경영주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안 제13조의 농업노동자 권리 조항과 합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④ 식품 및 식품산업 관련 내용 삭제

개정안은 정의를 포함하여 법률 전체에서 식품 및 식품산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음.

이는 식품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개정안에서는 농민 중심의 규정만 두려는 취지로 파악됨.¹⁶⁾

15) “농업노동자”란 제2호가목·나목의 사람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농업 또는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2호가목·나목의 사람>

2. “농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이 법상 농민으로 본다.

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6호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제7호의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 지역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활용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6)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2025. 3.) : “식품 관련 내용은 ‘먹거리 기본법’으로 분리”(「농민기본법의 내용과 체계」,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다만, 현행법이 농산물뿐만 아닌 수산물과 기타 식품도 포괄하고 있는 식품·식품 산업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이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다수의 법률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책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식품 관련 법체계 전반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식품 관련 조문 삭제로 인해 근거가 상실되는 현황(예시)]

현행법	개정안	관련 사업
제3조제7호 식품의 정의	삭제	「식품산업진흥법」 등 개별법의 “식품” 정의 상실
제3조제8호 식품산업의 정의	삭제	「식품산업진흥법」 등 개별법의 “식품산업” 정의 상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삭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수행 근거 상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 포함가구에 농식품 구매권 지급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 획의 수립·시행)	삭제	지역먹거리 계획,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근거 상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식품 내용 삭제	식품 기술개발 근거 상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에 기술개발 근거 존재)

이하에서는 식품 및 식품산업 관련한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⑤ 그 밖에 정의 규정

‘농업’, ‘생산자단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정의는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개념으로, 개정안 전체에 적용되는 용어 변경 등¹⁷⁾의 수정만 있고, 현행법에 비해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음.

17) 식품 관련 내용 삭제, 농업인을 농민으로 변경,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4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민·소비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책임농정을 통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며,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농지 확보·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농민수당 등을 통하여 공공영역을 넓혀 나가고, 국민들에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하여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서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며, 농민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민----- ----- ----- 농촌에서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며 농촌공동체 유지를----- -----. ③ ----- 계획적 생산을 통한 수급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농업생산의 개선----- ----- ----- 농민----- -----. <삭 제>

현행	개정안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의 지속을 위하여 우리 농산물 이용과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에 협력하여야 한다.

책무 규정은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법에 다수 존재하는 입법 형식으로, 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전부개정안 전체 체계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음.

다만, 안 제4조제4항은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 이용과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에 협력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18)의 소비자의 권리와도 충돌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18)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바. 농민의 날

안 제5조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변경(농업인 → 농민)과 표현방식(어순)만 정비하여 현행과 특별한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 없는 입법조치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u>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u> 매년 11월 11일을 <u>농업인의 날</u> 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u>농업인의 날</u> 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민의 날) ① <u>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u> ----- ----- <u>농민</u> -----. ② ----- --- <u>농민</u> ----- -----.

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6조는 농민·농업·농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시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u>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농민·농업·농촌</u> ----- ----- -----.

기본법은 그 분야에서 지도법·지침법으로서 개별법을 유도하게 되므로, 향후 제정·개정되는 다른 법률이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¹⁹⁾,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19) 「법제기준과 실제」(법제실, 2024) (유형별 입법모델 p. 929, 법제실, 2024)

2. 농민의 권리(안 제2장)

안 제2장은 농민의 권리 8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① 농민의 식량주권, ② 종자권, ③ 안전하게 농사지를 권리, ④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 ⑤ 물에 대한 권리, ⑥ 농산물 가공권, ⑦ 농업노동자의 권리, ⑧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UN 농민권리선언(2019.1.21.)’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농민을 단순 생산주체가 아닌 권리행사의 주체로 격상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가. 농민의 식량주권

안 제7조는 농민이 ① 식량을 생산할 권리, ②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 ③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농민의 식량주권) 농민은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농업 생산에 있어 농민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업 및 농민의 입지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안 제7조의 제명을 ‘농민의 식량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 중 ‘식량주권’²⁰⁾을 규정한 사례가 없으며²¹⁾ 식량주

20) 일반적으로 식량주권은 민족, 지역, 또는 공동체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권은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 생존수단인 식량에 관하여 공동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주권의 보유자를 농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농민에게 부여하는 것 또한 상품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종자권

안 제8조는 농민이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를 보관·활용·교환·판매할 수 있는 ‘종자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종자권) ① 농민은 농업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해온 종자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그 활용에 따르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고,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 또는 번식 물질을 보관·활용·교환 및 판매할 종자권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보유해온 토종종자의 사용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토종종자 보존·보급, 토종농작물 생산비 보전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이 적기에 공정가격으로 충분한 양의 양질의 종자를 선택에 따라 파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종자권이 도입되는 경우, ① 농민이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토종 종자의 사용 및 판매가 가능해져 종자의 기업 의존도가 낮아질

21) 반면,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는 다수 있음.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1조제3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4조제3항

수 있고, ② 다양한 종자의 경작으로 생물다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③ 토종종자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 식량주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²⁾

다만,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²³⁾은 식물 신품종 육성자에게 20년간(과수·임목은 25년간)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품종보호권’ 제도²⁴⁾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농민이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 등을 보관·활용·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과 권리 보장 측면에서 충돌할 여지가 있는 측면²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충돌 우려로 UN 인권이사회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 채택 투표시 기권²⁶⁾한 바 있고,

현재도, 개정안에 대해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²⁷⁾에 따라 육종가의 권리가 우선되는 ‘품종보호권’과 중복되어,

22) 이러한 토종종자 활용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도 토종종자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등록된 토종유전자원은 5만 6,700여개에 달하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토종종자 지원 조례를 만들고, 토종종자 증식·공급 관련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 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4) 품종보호제도: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

- (효력) 품종보호권자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이를 위한 전시를 포함)할 권리를 독점

- (존속기간)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 2024년 12월 현재 총 10,396건의 품종보호권 등록

25) 또한, 우리나라는 신품종 보호를 강화하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에 가입(2002년)되어 있는 바, 농민이 종자를 자유롭게 활용·판매할 경우 해당 국제규범과도 충돌할 여지도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민의 자가채종 종자를 판매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종자산업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자국의 종자관련 규정을 준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외교부에 대안으로 제시함(수정의견이 미반영되어 기권함)

‘종자권’과 충돌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다. 안전하게 농사지를 권리

개정안은 농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지를 권리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안전하게 농사지를 권리) ① 농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지를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민은 농약 또는 농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권리 및 농업이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노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농약 사용 또는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 방치 등으로 건강 위해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내 농업인은 비농업인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약 1.2배²⁸⁾ 높은 실정임. 개정안은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영농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농작업 안전 예방 시책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²⁹⁾에 근거하여 이미 추진되

2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28) 「제2차(’25~’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5. 2.)

2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국가 등에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실익이 높지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안 제9조제2항(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및 제3항(환경오염 피해방지)은 같은조 제1항(안전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권리 및 농작업 재해예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술한 것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안 제9조(안전하게 농사지을 권리)	
① 농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권리 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농민은 농약 또는 농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권리 및 농업이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노출되지 아니할 권리 를 갖는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농약 사용 또는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 방치 등으로 건강 위해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농민 및 농촌주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개발·처리·운송·활용·이송·유포 또는 환경 방출로 농민 및 농촌주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 발생, 작물재배 환경 저해, 토종동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또는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이용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³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건강 문제, 기존 농산물을 오염시킬 우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①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적 작물개발이 지연되거나, ② 수입 농산물로부터의 국내 자국 농산물에 대한 보호조치로 간주되어 무역 갈등이 유발될 수

30)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국내에서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수입되고 있고,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보임.

※ 국내 GMO 수입량



*자료: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통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재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³¹⁾에,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³²⁾에 규정을 두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물에 대한 권리

안 제11조는 농민이 농업에 필요한 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물에 대한 권리) ① 농민은 농업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농업 생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농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남용을 막아 적정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며 수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수자원 이용량 중 농업용수는 가장 높은 비중인 약 42%³³⁾를 차지하여, 국가의 물 관련 정책에 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됨.

3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축산식품부

33)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20, 국토교통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환경부)

이를 고려하면 물 관련 정책 수립에 농민이 참여하고, 농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물에 대한 기본법인 「물관리 기본법」³⁴⁾은 누구나 적합한 수질의 물을 공급받고, 가뭄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물관리 정책에 대해 지역 주민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물관리에 관하여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적용 우선순위 등에 있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

한편, 환경부는 개정안의 농업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에 대해, ‘하천수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 제107조³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외의 농업용수 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4) 「물관리기본법」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5) 「농어촌정비법」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바. 농산물 가공권

안 제12조는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유통·수출·판매할 권리를 갖고, 국가 등이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농산물 가공권) ①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유통·수출·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농민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가공(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 등에 절이거나, 숙성·발효시키거나, 즙을 짜거나, 가열하는 등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품을 제조·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농산물 가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공 시설 설치 및 유통·수출·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비록 소규모라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 엄격한 시설기준³⁶⁾을 요구하여, 영세한 농업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³⁷⁾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농민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 수출, 판매까지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농민에게 농산물 가공·유통·수출·판매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의

36)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건물위치, 작업장, 급수시설, 검사실, 창고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만, 특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부분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함.

37) “‘농민가공’ 참여 저조…규제 더 풀어야”(농민신문, 2025. 1. 23.)

영업신고³⁸⁾ 등의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을 가공품 제조·판매 관련 영업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식품위생법령 체계 내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사. 농업노동자의 권리

안 제13조는 농업노동자의 휴게와 휴일 등 노동 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농업노동자의 권리) ① 농업노동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노동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 노동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 농업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농업노동자는 노동의 필요에 따라 노동하는 장소 인근에 주거해야 할 경우에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음식과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농업노동자는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⑤ 농업노동자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38)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은 농업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³⁹⁾가 농업 분야에는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인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그동안 농업노동자의 인권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⁴⁰⁾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내용이 근로조건·노동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고용보험법」 등의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일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서 보호하려는 농업노동자의 범위가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과 상충되어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아.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

안 제14조는 외국인 농업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체류 기간 동안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한 국내에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39)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0) “주52시간 근로기준 완화, 농업은 여전히 미흡하다(농민신문, 2024. 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권리) ① 외국인 농업노동자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 농업노동자는 입국 시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에는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한 국내에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③ 외국인 농업노동자는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⁴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고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04년 도입되었음.⁴²⁾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⁴³⁾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허가사업장을 떠나면 체류자격이 박탈되므로, 이는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거나, 강제노동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⁴⁴⁾되고 있음.

개정안은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한 고용허가사업장을 떠나도 국내에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관계

4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2) 2025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10,243명으로 집계됨(e-나라지표(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1분기 기준).

43)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뉴시스, 2024. 8.) 등

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21조⁴⁵⁾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체류와 고용, 국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무단 이탈 시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45)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원칙(안 제3장)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u><신 설></u>	제15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농업·농촌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농민의 권리 보장과 적정 소득 보장 2.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 목표 달성 3. 국가책임농정 실현 및 공공농업 기반 확보 4. 성인지 관점에서 농업정책 수립 및 농촌에서 평등 실현 5.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6. 농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② -----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고 효율성을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 농민·농업·농촌 정책을 세울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 달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량에 관한 정책을 생태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 및 생산기반 확충, 농업종사자 확대,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농업 기술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u>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u>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u>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촌주민의</u>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제17조(농민의 적절한 소득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하며 적절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제1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u>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u> 발전) ① ----- -----<u>운영</u>----- ----- -----<u>농업</u>----- -----<u>농민</u>-----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토지의 특성과 지역 환경에 맞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증진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농업생산지식을 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 ----- <u>농산물의</u> ----- ----- -----. 제19조(농촌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농업과 농업 연관 산업공간 및 도시와 연계된 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u>농촌주민의</u>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택, 상

현행	개정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 -----. 제20조(농업·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며 기후정의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자치조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마다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촌 지역의 주민자치조직이 형성·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농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농민 ----- ----- 농업----- -----. ② ----- ----- ----- -----농민----- 정보제공-----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통일 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 -----농산물의----- -----남북한의 농업협력 및 농산물 교류로 남북 주민 모두 식량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적 협력을 증진하며, 통일을 대비한 농민·농업·농촌----- -----.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 -----식량자급률 현황 및 농업·농촌----- ----- ----- -----.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울 경우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농촌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농민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외통상정책 시행으로 농업·농촌에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수립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 ----- -----경우 통상조약 개정을 포함한----- -----.

먼저, 안 제3장(농민·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원칙)은 이 법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에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전부개정안은 식품 및 식품산업에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면서도 기존 64개 조항을 125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각 조항에서는 정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의 수립·시행 원칙(안 제3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각 규정에서 상세히 기술되고 있으므로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앞서 살펴본 안 제2조(기본이념) 및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농민·소비자 등의 책임)와 기능이 유사하여 기본원칙의 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안 제3장과 중복되는 규정 현황]

개정안	내용	중복 규정 (보다 상세한 내용 규정)	조문
제15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1절 농민·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5조~제32조
제16조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 달성	제2절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제6절 농지의 보전과 확충	제33조~제39조 제69조~제78조
제17조	농민의 적절한 소득 보장	제5절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	제59조~제68조
제1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제3절 건강한 농산물 공급 제7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8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0조~제46조 제79조~제89조 제90조~제92조
제19조	농촌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0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농촌주민의 권리 보장	제97조~제113조
제20조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제9절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 적응	제93조~제96조
제21조	주민자치조직	해당 없음	-
제22조	농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4절 농민의 양성 및 농업 종사자 확충	제47조~제58조
제23조	통일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	제11절 통일 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과 국제협력	제114조~제120조
제24조	통상 및 국제협력		

다음으로, 안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지역의 주민자치조직이 형성·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른 조문과 유사한 측면이 없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주민자치조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마다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촌 지역의 주민자치조직이 형성·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1조는 농촌 지역의 주민자치조직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스스로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최근 농촌 지역 기반 공동체가 복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사례⁴⁶⁾들이 등장함에 따라, 자발적인 공동체 육성을 통하여 농촌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를 육성·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3년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이 법률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46) 농촌 지역 기반 공동체 서비스 제공 사례

-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농촌 지역의 요구에 맞춰 귀농인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돌봄, 일자리, 생필품 구매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발굴 및 해결('07년~)
 - 이동식 생필품 점포(동락점빵), 모싯잎송편 가공 일자리(협업농장) 창출 및 노인 돌봄, 초등학생 체협, 도시청년 이주돌봄(사회적농장), 요양서비스(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수익 창출
 -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 노인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운영
- (하동 횡천초등교육공동체) 면단위 초등학생(전교 31명) 등을 대상 방과후 학교(가야금교실, 골프교실, 사물놀이교실 등)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12년~)
 -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하여 농촌주민을 외부강사로 활용, 면단위 시설(골프연습장 등) 이용

4. 농민·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시행(안 제4장)

가. 제1절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는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체계에 대한 규정을 전부개정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대비 주요 변경내용은 ①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농식품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하고, ② 현행 7개의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2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③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는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임.

현 행		구분	개 정 안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명칭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립주체	국무총리
	5년마다	주기	5년마다
	계획 포함사항 7개 ① 정책의 기본방향, ② 식량자급 목표,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추진 시책, ④ 시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⑤ 쌀 소비확대 시책, ⑥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발전 필요사항, ⑦ 그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사항	· 현행 7개 포함사항의 범위를 농민·농업·농촌으로 변경 · 13개 포함사항 추가 - 농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계획, 농민의 안전·보건 증진계획, 농업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14 ③	· 식량·식품자급 목표 포함항목 명시 - 식용 곡물,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지자체 계획	§26 · 별도 규정으로 분리 · 식량자급 목표 포함항목 추가 *서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계란
§14 ⑤⑥⑦	· 시·도 계획 · 시·군·구 계획		§25 ④⑤ (현행과 같음)
§15	·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발전계획 수립·변경 등 심의	중앙 위원회	§27 ·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 명칭변경 및 의결기능 추가 - 심의·의결사항 구체화
	· 위원 구성·운영은 대통령령 위임		§28 · 위원회 구성 등 법률에 명시 - 국무총리 등 30명 이내 위원, 임기 2년, 위원의 요건 등
	· 시·도 /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자체 위원회	§29 · 시·도 / 시·군·구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 명칭변경 및 의결기능 추가, 심의·의결사항 구체화
§1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에 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되도록 노력	예산 확보	§3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에 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함 (현행과 같음)
§17	·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하여 국회 제출 등	연차 보고서	§31 *농민·농업·농촌으로 용어 변경, 인용조문 변경만 반영
§18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 정비 노력	행정 조직 정비	§32 (현행과 같음) *농민·농업·농촌으로 용어 변경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 -----. 1. 농민·농업·농촌----- ----- 2. 농민의 식량주권과 종자권 등 권리 실현을 위한 계획 3.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계획 4. 농민의 안전·보건 증진 계획 5. 농업노동자의 인간존엄을 위한 노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계획 6. 국가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 설정 및 그 추진계획 수립,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8. 제7호의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총량관리제 실시 및 우량농지확보방안 9. 제7호의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현행	개정안
<u><신 설></u>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u>농업·농촌</u> 및 <u>식품산업</u>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u>농업경영비</u> 절감 등 그 밖에 <u>농업·농촌</u> 및 <u>식품산업</u>의 <u>종합적·계획적</u>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u><신 설></u> <u><신 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및 <u>특별자치도지사</u>(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u>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u>농업·농촌</u> 및 <u>식품산업</u>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u>농업·농수 등 필수 생산기반의 확보방안</u> 및 <u>재원의 조달방안</u> 10. <u>식량자급률</u> 제고 대상 <u>농산물의</u> 우선 구매 등 <u>식량자급률</u> 제고 <u>확보방안</u> 11. (현행 제2의2와 같음) 12. <u>여성농민, 소농과 가족농에</u> 대한 지원 및 <u>농업종사자</u> <u>확충에</u> 관한 계획 13. <u>농업·농촌에서</u> 성·인종·국적 등으로 한 차별철폐와 <u>평등 증진</u> 계획 14. <u>농촌주민이</u> 쾌적한 환경에서 <u>충분한</u> 복지를 누리며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15. <u>농업·농촌에서</u>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 기후위기 적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u>농업·농촌</u>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16. <u>농업·농촌에</u> 영향을 미치는 <u>통상조약</u>에 대한 <u>영향평가</u> 및 <u>통상조약</u> 개정을 포함한 <u>보완계획</u> 17. ----- <u>농민·농업·농촌</u>----- 18. <u>비용</u> -----<u>농민·농업·농촌의</u>----- 19. <u>농민·농업·농촌에</u>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u>예산·기금의</u> <u>운영계획</u> 및 <u>재원의 조달방안</u> 20. 그 밖에 <u>농민·농업·농촌에</u>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③ <u>국무총리</u>는 ----- -----. ④ ----- ----- ----- ----- ----- ----- <u>농민·농업·농촌</u> <u>정책계획</u>-----

현행	개정안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u>(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u>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신 설>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사 제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 -----. ⑤ ----- ----- ----- ----- 농민·농업·농촌 정책계획----- -----.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6조(식량자급률) 국무총리는 제25조제2항제6호·제7호에 따른 식량자급 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체 곡물(사료 곡물을 포함한다)의 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자급률 2. 전체 식용 곡물의 자급률 및 주요 식용 곡물의 자급률 3. 서류, 채소류, 과일류의 자급률 4. ----- 우유 및 유제품, 계란의 자급률 5. (현행 제3의2호와 동일) 6. ----- ----- 말한다. 이하 같다) 제27조(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①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개정안
<u>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2. <u>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u> 3. <u>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 ③ <u>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1. <u>기본계획-----</u> <u>-----</u> 2. <u>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곡물자급률 및 열량 자급률 등 목표 설정과 자급률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u> 3. <u>농지 총량 설정 및 농지 전용 방지, 농지 확보에 관한 사항</u> 4. <u>농민 육성 및 농민과 농업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u> 5. <u>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과 기후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u> 6. <u>남북 농업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7. <u>농업 분야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통상조약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u> 8. <u>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농민·농업·농촌정책</u> 9. <u>위 각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u> 10. <u>농민·농업·농촌정책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u> 11. <u>제31조에 따른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연차보고서</u> 12. ----- 농민·농업·농촌--- 심의·의결 ----- <u><삭 제></u> <u>제2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민간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u>

현행	개정안
	<u>농민 단체 추천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의 사람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u>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u> <u>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u> <u>가. 농민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u>나. 주요 농산물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u>다. 농업노동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u>라.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u>마. 농민·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u> <u>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역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 ① 시·도에 시·도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민·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 ----- 제25조와 제29조----- ----- ----- 기본계획----- ----- 매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 농민·농업·농촌----- 제26조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 ----- ----- ----- ----- -----. ② ----- ----- 농민·농업·농촌----- -----

현행	개정안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u>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u>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_____. ③ _____ <u>농민·농업·농촌 현황</u> _____. 제32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 ----- <u>농민·농업·농촌</u> ----- ----- -----.

첫째, 안 제25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국무총리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기본계획의 ‘농민·농촌·농업 관련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만이 아닌 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이 관계 부처가 종합하여 수립할 사항이 아니므로, 계획 수립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안 제25조제2항의 기본계획 포함사항들이 일부 중복되어 정리가 필요해 보임.

① 안 제2호는 ‘농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계획’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앞서 안 제2장에서 ‘농민의 권리’로 소득보장, 안전한 농업환경, 노동권, 평등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3호는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을, 안 제4호는 ‘농민의 안전·보건 증진’을, 안 제5호는 ‘농업노동자의 노동권’을, 안 제13호는

‘평등 증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2호의 ‘농민의 권리 실현’과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구분		내용
안 제25조 제2항	제2호	농민의 식량주권과 종자권 등 권리 실현을 위한 계획
	제3호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계획
	제4호	농민의 안전·보건 증진 계획
	제5호	농업노동자의 인간존엄을 위한 노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계획
	제13호	농업·농촌에서 성·인종·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와 평등 증진 계획

② 안 제18호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0호는 ‘그밖에 추진할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내용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보이므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구분		내용
안 제25조 제2항	제18호	비용 절감 등 그 밖에 농민·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호	그 밖에 농민·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한편, 안 제19호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및 기금의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이고, 예산 및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구분		내용
안 제25조 제2항	제19호	농민·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기금의 운영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안

셋째, 안 제27조 및 제28조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는 ‘농민·농업·농촌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⁴⁷⁾에서 중복위원회의 신설을 금지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⁴⁸⁾ 등 기존 관련 위원회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4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넷째, 안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등의 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사업비를 법률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한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섯째, 그 밖에 연차보고서, 행정조직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은 일괄적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만 있고, 특별하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음.

나. 제2절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1) 식량주권

안 제33조는 모든 사람의 식량 접근권, 농민의 농업체계 결정권 및 식량 생산권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식량주권) ① 모든 사람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② 농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에 맞는 농업과 식량 체계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③ 농민은 국토와 수자원, 종자, 가축 및 생물다양성을 이용하고 관리하여 식량을 생산할 권리를 갖는다.

먼저, 안 제33조제1항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식량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법률 내에서 ‘식량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식량주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은 농민의 식량 체계 결정 및 식량 생산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농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제2장 농민의 권리’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고,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 또한 안 제7조(농민의 식량주권)⁴⁹⁾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안 제7조와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9) **안 제7조(농민의 식량주권)** 농민은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 식량자급 목표

안 제34조 및 제35조는 국가 식량 자급 목표를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 열량 자급률 80%로 하고, 2035년까지 곡물자급률 35% 이상, 열량자급률 7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달성하도록 중장기 목표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4조(국가 식량자급 목표 등)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사료 곡물을 포함한다) 50%, 열량 자급률 80%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 식량자급 목표로 한다.
<신설>	제35조(중장기 식량자급 목표 등) ① 국가는 2035년까지 곡물자급률(사료 곡물을 포함한다)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열량 자급률을 70% 이상의 범위에서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 중장기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이하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국가는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곡물, 채소, 과일, 육류 등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이하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와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이하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매년 50% 내외로 설정한 목표(2023~2027년 55.5%)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개정안은 국가 식량자급률의 중장기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① 기후변화 등 국내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수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측면과 ②

농산물 생산확대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민의 피해 등의 우려사항도 있으므로, 개정안은 동 제도로 인한 효과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한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자급 목표는 농지면적, 생산량, 국민식생활 변화 경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 단위가 아닌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 식량자급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안 제36조는 국무총리 소속 농민·농업·농촌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이행현황의 점검 및 보완계획 수립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 및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식량자급률이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량자급률이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 목표 달성 보완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식량자급률이 연도별 식량자급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계획 수립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완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현 행	개 정 안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식량자급 목표 달성 보완계획안 작성, 제4항에 따른 보완계획 및 예산확보계획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단위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자급률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아도 후속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않음.

안 제36조는 자급률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보완계획과 예산확보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자급률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조항들은 식량자급률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4) 우선 구매 요청

안 제3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국가기관 등의 기관의 장에게 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우선 구매 요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농산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산농산물 구매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재고처리 및 가격폭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을 감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국산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자급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GATT⁵⁰⁾ 규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우에만 국산 우선구매 요청이 허용되며, ‘요청할 수 있다’라는 행정지도 등도 내국민대우 의무를 적용받아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⁵¹⁾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²⁾

50)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5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 GATT 제3조 제8항 (a)는 ‘본 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하여서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산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에 관하여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정부가 국내산품을 구매하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2) 현재, 개정안과 같은 범위의 대상에게 농산물(밀)을 우선 구매 요청하는 입법례가 존재함.

「밀산업 육성법」

제17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 재배

안 제3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품목 생산·가공·유통·판매업자 사이의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계약재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농산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해당 품목 생산·가공·유통·판매업자 사이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계약생산은 생산자가 사전적인 계약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 수확물을 인도하는 생산방식으로, 농산물 생산자가 사전 계약을 통하여 미리 판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해진 물량을 생산하게 되므로 농산물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개정안은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하여 국가 등이 계약재배를 지원·장려함으로써, 공공부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농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⁵³⁾에서 농산물 계약생산 및 출하 등에 대한 유사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식량의 안정적 공급

안 제39조는 식품 관련 내용의 삭제, 그밖에 자구 정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부개정안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 살펴본 검토사항과 같으며, 그 밖에 자구정리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39조(식량의 안정적 공급) ① -----
①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 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u>식량 및 주요 식품</u> 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u>식량</u> ----- ----- ----- ----- <u>식량</u> ----- ----- ----- -----.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u>효율적 이용</u> 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u>식량</u> ----- ----- <u>보전과 효율적 이용 및 확충</u> -----.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u>식량과 주요 식품</u> 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u>식량과 주요 식품</u> 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 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 ----- <u>식량</u> 의 ----- ----- <u>식량</u> 을 ----- ----- -----.

다. 제3절 건강한 농산물 공급

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는 건강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민의 인증체계에 대한 참여, 농산물 안정성·품질·위해성에 대한 관리체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참여인증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생태적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평가 및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 <u>농산물이 안전하게</u> ----- ----- ----- ----- 제42조(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 국 ----- <u>농산물</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관리) ① (현행 제20조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u>품질 좋은 식품</u>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u>가공식품 및 전통식품</u>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u>농업인</u>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u>농산물 및 식품</u>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u>농산물 및 식품</u>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u>수입 농산물의 위해성이 의심될 경우 수입을 임시 중단하고 위해평가 및 유통금지조치</u>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와 관리 등) 정부는 <u>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농산물을 수거하여 조사하고 유통금지조치</u>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45조(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① ----- -----<u>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u> ----- -----<u>가공품</u> ----- -----<u>등의 연구개발, 시설</u>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u>가공·유통·판매하는 농민에 대하여 시설 기준 완화 및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제46조(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등) ① -----<u>농민</u>----- ----- -----<u>농산물</u>----- ----- -----. ② -----<u>농산물</u>----- ----- ----- -----.

첫째, 안 제40조는 농산물 품질의 평가·인증체계⁵⁴⁾에 농민의 참여를 위한 정책을 국가 등이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관련 제도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⁵⁵⁾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가 농산물의 품질인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을 개정하여 농민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공정·공평·체계·접근 등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안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임.

54)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①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②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③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④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⑤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등의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

5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 차. (생략)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4.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 11. (생략)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둘째, 안 제43조는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평가 및 유통금지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위해한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농산물은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⁵⁶⁾에 따라 안전성 조사, 수거 및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상세한 예방 및 조치 체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부개정안에서 다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44조는 정부가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산물을 수거·조사·유통금지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농산물 유전자변형 표시 및 안전성조사 관련 내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⁵⁷⁾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법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56)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2.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57) 현행 농산물의 유전자변형 표시 제도와 안전을 위한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할 의무, 표시 위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수거·조사, 거래행위 금지 등을 할 수 있음.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생산·유통·판매 단계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고, 수거·조사, 폐기,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넷째, 안 제45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민의 거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에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임.

그동안 농업인의 소량·직접 생산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경우 까지 일반 식품기업 수준의 시설기준⁵⁸⁾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 수준이 낮은 농업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농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려는 경우 등에는 현행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⁵⁹⁾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일정 부분 실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기준 등은 「식품위생법」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58) 식품을 제조·가공·운반·판매·보존 등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37조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군·구청장 등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예시)

구분	세부 기준(일부 예시)
건축물의 위치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하 생략)
작업장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9) 농업인 등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식품위생법」)

-농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제4절 농민의 양성 및 농업 종사자 확충

1) 가족농 지원

안 제4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농 및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47조(가족농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농(혼인한 부부 또는 결혼과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한 쌍방이 모두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으로서 공동으로 제3조제1호의 농업 또는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농가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농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여건 개선, 돌봄의 평등한 분담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가족농⁶⁰⁾은 농촌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구성원으로서, 농촌지역의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농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60)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에 따르면, 농업인 254만명 중 경영주 182만명, 가족 71만명이 등록되어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현황(2024년 기준)

(단위: 개, %)

구 분	농업경영체							합 계
	농업인				농업법인			
	경영주	가족	피고용인	소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계	
경영체 수	1,823,406	713,150	2,702	2,539,258	7,459	10,497	2,546,717	2,557,214
비중	71.3%	27.9%	0.1%	99.3%	0.3%	0.4%	0.7%	100.0%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현황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

다만, 안 제47조제2항은 가족농의 자녀의 교육 여건 및 돌봄의 평등한 분담에 대한 국가 등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안 제109조, 평등한 분담에 대해서는 안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안 제47조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47조 (가족농 지원)	안 제109조 (농촌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과 농촌 출신 학생에 대한 지원)	안 제51조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 대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농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여건 개선, 돌봄의 평등한 분담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업 종사, 종자 보존 및 전통 농법과 문화 계승, 농가소득 보전, 가족 돌봄 등 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존속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여성농민을 남성농민과 동등한 독립적인 농업 주체로 대우 하여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⁶¹⁾에서 농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6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농업 인력 확보

안 제48조 및 제5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종사자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농업 종사자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유지를 위하여 농업 종사자를 늘리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며 안정적 소득과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농업 인력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의 농업 지속 및 파종·수확에 필요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혹은 근로자공급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하게 농민 또는 농업법인에 농업노동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폭리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노동자를 공급받는 농민 등이 직업소개사업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항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종사자 양성,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일손부족⁶²⁾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보임.

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은 농가가 84.1%에 달하였으며, 일손부족 현상이 과거 5년 전과 비교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이 85.0%를 차지하였음. 이와 같이 농촌 인력공급이 부족한 것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수준(타 산업 임금의 70% 수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지속적인 고용유지 곤란, 지역적으로 낮은 접근성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농업 인력 확보에 대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023년 제정되었고, 직업소개사의 의무와 벌칙에 대해 「직업안정법」,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3)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 대우

안 제51조 및 제52조는 여성농민을 남성농민과 동등한 농업 주체로 대우하고, 여성농민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여성농민에 대한 동등 대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업 종사, 종자 보존 및 전통 농법과 문화 계승, 농가소득 보전, 가족 돌봄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존속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여성농민을 남성농민과 동등한 독립적인 농업 주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여성농민의 평등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에 대하여 농업노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업협동조합 및 품목별 생산자협회의 등 생산자단체에서 독립적인 농업 주체로서 단체활동 전반에서 동등한 의사결정참여권과 금융이용기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농촌의 유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여성농민이 주민자치조직의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여성농민에 대한 노동 차별⁶³⁾을 없애고, 농촌에서 남녀의 지위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의의가 있어 보임.

다만, 여성농민의 평등을 위한 사항은 개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수 마련하고 있으므로, 동 기본법에서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간결하게 기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1조(여성농민에 대한 동등 대우)와 제52조(여성농민의 평등권 보장)는 조문의 목적 및 내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법 체계를 위하여 양 조항을 통합·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봄.

63)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 보다 동등하거나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비율이 여성은 25.7%, 남성은 33.9%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성 71.4%, 남성 66.6%가 동의하는 상황임(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24.4.)). 이러한 농업 현장의 가부장적 농촌 문화와 여성 노동력의 평가절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산업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농업·임업·어업 분야로, 48.2%의 임금격차가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바, 이는 전국 월 평균 임금 성별 격차 35.7%보다 12.5% 높은 수준임(「지역별 산업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4) 가족농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 보장

안 제53조는 가족농인 부부 또는 유사 공동체가 농지와 농업 생산설비에 대한 공유 약정을 한 것으로 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대장 공동명의 기재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가족농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 보장) ① 가족농 구성원인 부부 또는 결혼과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한 쌍방 사이에서는 농지와 농업 생산설비에 대하여 부부 또는 쌍방의 공유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이 농지와 농업생산설비의 소유와 이용 등에서 가족농의 다른 구성원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대장 공동 명의 기재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⁶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라도 이를 명의가 되어 있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될 수 있으나⁶⁵⁾,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은

64)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6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⁶⁶⁾고 판시한 바 있음.⁶⁷⁾

이에 따라 가족 중심의 무임금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에서 부부 일방의 재산권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가족농인 부부는 농지·농업생산설비에 대해 쌍방 공유 약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족 내 무임금노동으로 인한 불평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① 자금의 출처, 기여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혼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 등을 공유재산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과,

② 다른 직업에 비해 농업 분야의 혼인에만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특정 직업에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유 재산인 농지 및 농업 생산 설비의 소유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 수립 의무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6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건물명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67) 김주수·김상용, 주석 민법[친족(1)], 2016, p.484-485

5) 농민 등의 법인 설립 지원

안 제54조 및 제5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민 등의 법인 설립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 등이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업 생산 증대와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조합법인: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 및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할 것 2. 농업회사법인: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넘을 것
<신설>	제55조(기존 농업법인의 전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제54조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8)에서는,

6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②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총 출자액이 80억원 이하면 출자액의 90%까지,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민과 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②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생산자단체·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율이 50%를 넘어야 함.

이는 개정안의 농민 개념을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수용하도록 하고,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과도하게 출자하여 영세 농업인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영세한 농업인·생산자단체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농업회사법인 제도는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적 농업경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1994년 도입되었으며,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를 초기 50% 수준에서, 현행처럼 90%까지 확대⁶⁹⁾하였음.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69) 농업회사법인 출자액 한도 변화

-1994년 총 출자액의 50%, → 2004년 70%→ 2009년 90% → 2012년 90%,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원 제외 금액

즉, 개정안의 비농업인 등의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농업 규모화’의 필요성과 ‘영세 농업인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6) 그 밖에 자구정리 사항

안 제49조, 제50조, 제56조 및 제57조는 “농업인”을 “농민”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현행	개정안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u>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u> 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후계농민의 육성) ----- ----- ----- <u>후계농민</u> ----- ----- -----.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 <u>전업농업인</u> ”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업농업인</u> 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전업농민의 육성) ① ----- ----- <u>전문농업기술</u> ----- ----- -- <u>농민(이하 “전업농민”</u> ----- -----. ② ----- ----- ----- <u>전업농민</u> ----- -----.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u>영농·경영기법</u> 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56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 ----- ----- <u>영농기법</u> ----- -----.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u> 의 성공적인 정착과 <u>경영기반 조성</u> 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u>창업 지원</u>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귀농인의 육성) ----- ----- <u>귀농인</u> ----- ----- <u>농민</u> ----- <u>농민</u> ----- ----- ----- <u>농업 등 진입·유지를</u> ----- ----- <u>행정적·재정적 지원</u> ----- -----.

마. 제5절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

1)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관련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보험 운영 등의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안 제60조는 가격 폭락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운영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자연재해</u> 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u>경영</u> 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u>기후변화</u> 등 농업 <u>재해</u> 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 ----- <u>자연재해 및 가격폭락</u> ----- <u>운영</u> ----- ----- <u>고온, 병충해, 기후변화</u> ----- <u>재해</u> <u>및 가격폭락</u> 에 -----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위험을 관리하는 수입안정보험시범사업의 순보험료를 50% 지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 왔음.

그러나, 현재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바,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을 의결('24.12.10)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

련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⁷⁰⁾되어 있고, 수입안정보험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인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법률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농산물 공공수급제 및 공정가격 설정

안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은 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① 국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켜 국민 생활의 부담을 덜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 시 공공이 매수하여 공급 부족시 방출하는 공공수급제(이하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함에 있어 주요 농산물의 선정 및 매수·방출 시기와 규모, 가격 결정에 농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의 적용 대상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의 공정가격 설정) 국가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시행 시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비와 농민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수급안정조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수급안정조치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하여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경작면적 조절, 출하 조

70) 이와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2024.10., 정희용의원 2025.4.)이 우리 위원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임

현 행	개 정 안
	<u>절, 시장가격 차액보상 등 수급안정조치를 실시할 경우 국가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② 국가는 제1항의 수급안정조치의 적용 대상 농산물과 참여 농민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신 설>	제64조(농업생산비용 경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농업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등 농업생산비용 경감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공정가격 범위 설정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제1항의 유통시설에서 농산물 유통 시 생산비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공정가격 범위를 설정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생산자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16조⁷¹⁾에 따라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매년 미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생산량 및 가격 등에 따라 정부가 미곡을 매입·매도⁷²⁾하도록 하고 있음.

71)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72) 미곡수급안정대책의 미곡 시장격리 조건 및 수량

○ 미곡의 매입

연번	구분	내용
1	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2.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2	수량	(원칙)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매입 가능 (예외)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 매입 가능

○ 미곡의 판매

연번	구분	내용
1	조건	(재량)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의무) 3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 순기(旬期): 한달(30일)을 10일 단위로 나눈 것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수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함 (생산량, 수요량,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료: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재가공

개정안은 위의 양곡에 대한 시장격리 제도를 주요 농산물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되,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비와 농민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설정하여 매입·매도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①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하여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고, ②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반면, 우려사항으로는 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② 특정 농산물의 재배 유인을 증가시켜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우려, ③ 주요 농산물 외의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한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는 공공비축 등의 현행 제도와 국제규범(AMS⁷³⁾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3) 공익 직접지불제도

안 제67조는 국가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73) AMS(감축대상보조,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규정하는 농업보조금의 총량을 뜻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7조(공익 직접지불제도) ① 국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제3조제2호가목에 한정한다) 및 농업법인(제54조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소득안정, 소농(제3조제2호가목의 사람 가운데 경작 면적, 소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시 소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품목 재배 면적 증대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익직접지불금의 액수는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2020년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쌀 중심 직불제가 공익중심 직불제로 개편된 것으로 농업·농촌의 단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농업인의 적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임.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내용]

개편 전		개편 후		개편후 직불금 내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FTA직불제 ➡	① 기본 직불 제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2024년 기준)
쌀소득보전직불제 : 고정, 변동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밭농업직불제 : 고정, 논이모작		② 선택 직불 제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 을 고려하여 지급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환경축산직불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전략작물직불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과, 2024.8.4.)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위와 같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⁷⁴⁾에 따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동 기본법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농민수당 신설

안 제68조는 국가가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농민수당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민수당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와 금액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수당 등의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조직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수당 등이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충분한 수준이 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 제68조는 농가 소득이 도시와 격차가 커지고, 농촌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농촌의 소득안전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 등의 명칭으로 농가당 1년에 3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의 소득 등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⁷⁵⁾가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과 내용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농민수당의 전국화와 평준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에

7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5) 지방자치단체별 농어업인 수당 지급 현황(2024년 6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대한 의견⁷⁶⁾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두 제도 간 중복 소지가 있다는 의견⁷⁷⁾도 있음.

즉, 개정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⁷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농업인 수당지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농업인에게 다층적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과 재정부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임.

한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재정여건, 유사 제도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수당과 유사한 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 예산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 기존 제도와 관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 및 국민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농민기본소득 도입 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공익직불제 등 기존 제도와와의 유사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기획재정부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 제정안에 대하여 기존 제도와와의 유사·중복, 타 업종과의 형평성 저해,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반대하는 입장

구분	지급명	시작연도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1~	농업인	농업인당 5만원/월(60만원/년)	지역화폐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21~	농림어가	농가당 7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북도	농어업인공익수당	'22~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20~	농업인	1인 농가 80만원/년 등	지역화폐
전라북도	농업종종교역가치지원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22~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22~	농가	농가당 30만원 등	지역화폐 등
제주도	농민수당지원사업	'22~	농업인	농업인당 40만원/년	지역화폐
울산광역시	농민수당지원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수당 지원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인천광역시	농어업인수당	'24~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76) 국회의원 윤소하의원실, <농어민기본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과 과제>, 2019, p8

77) 유찬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GS&J 인스티튜트, 2021

78) 기초연금은 이미 농업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5) 그 밖에 자구정리 사항

안 제59조 및 제65조는 “농업인”을 “농민”으로 변경하고 식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현행	개정안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산물과 식품</u>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u>농업·식품산업</u>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자조금)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u>농업경영체</u>, 생산자단체, <u>농산물 유통업</u> 및 <u>식품산업</u>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 <u>농산물</u>----- ----- <u>농업</u>----- ----- -----. ② ----- <u>농민과 농업법인</u>----- <u>유통업</u>----- -----.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산물과 식품</u>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산물과 식품</u>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업경영체</u>,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u>농산물과 식품</u>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농산물의 유통개선) ① ----- <u>농산물</u>----- ----- ----- -----. ② ----- <u>농산물</u>----- -----. ③ ----- <u>농민과 농업법인</u>----- ----- <u>농산물</u>----- -----.

바. 제6절 농지의 보전과 확충

1)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안 제69조는 농지를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에서 확보·보존되고 소중하게 이용·보전되도록 기본이념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u>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u>	제69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① ---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남북 주민 및 미래세대----- 식량----- -----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에서 확보·보존되고 소중히 -----.
<신설>	②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여, 농지의 투기억제 등을 통해 농지가 본연의 용도에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식량주권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공익적 자원으로써 보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 법 전체에서 사용되는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적 관점에서 개정안은 안 제2조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농지법」⁷⁹⁾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간의 충돌·중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⁸⁰⁾

한편, 개정안은 농지를 북한 주민에게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 주민 관련 사항의 법률 명문화는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외교적·정치적 맥락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농지의 보전과 확충 등

안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등은 농지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의 다른 목적 전용 등을 제한하여 농지를 보전·확충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70조(경자유전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79)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80) 한편, 안 제69조제1항에서 “확보·보존되고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는 표현은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자연스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	개정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1조(농민 등의 농지 소유) 농지는 농민(제3조제2호가목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농업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영농조합법인 2.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나.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일 것 다.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이 제3조제2호가목·나목의 농민일 것 제72조(예외적 농지 소유 허용) 제71조 이외의 농지 소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법」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 등이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2. 상속, 이농, 담보농지취득 등 일정 기간 내 처분 조건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 3. 농업진흥지역 외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등 일정 면적 이하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한다. 제73조(농지의 이용 증진 및 공공농지의 확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신설>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민,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농민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5조(농지의 보전과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주권 실현과 남북 주민 및 미래세대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규모로 농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총량관리제 및 우량농지·공공농지 확보 목표 설정 등 농지의 보전과 확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 ----- 보전되도록 -----. 제76조(농지전용 등 제한) ① 농지는 농업의 유지 및 농촌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제1항 등 법률에 정한 사유로도 전용될 수 없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전용과 타용도 일시사용 및 농지 지목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와 개발자로부터 그 이익을 환수하여 농지총량유지와 우량농지확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실태를 파악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지목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농업·농촌의 변화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은 여전히 최우선되어야 할 헌법상 가치인 점, 농지는 한번 훼손되거나 변형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비가역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지를 엄격하게 농업 본연에 목적에 이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러한 취득 및 이용·전용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농지 거래 감소 등 농지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일률적으로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 이후 농지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농지 거래는 전체 토지 거래가 전년 대비 6% 감소하였던 2021년에 12.6% 증가하였다가 2022년 및 2023년에 각각 24.4%, 27.2% 감소하였고,

2024년의 경우 전체 토지 거래가 증가세(2.7%)로 돌아섰음에도 농지 거래는 여전히 감소세(△6.8%)를 보이고 있음.

[농지 거래 현황]

연도	농지(전·답)		토지	
	거래량(필지)	전년대비 증감율(%)	거래량(필지)	전년대비 증감율(%)
2024	339,572	△6.8	1,875,747	2.7
2023	364,482	△27.2	1,825,728	△17.3
2022	500,578	△24.4	2,209,175	△33.0
2021	662,381	12.6	3,296,622	△6.0
2020	588,266	13.1	3,506,113	20.8
2019	520,085	△1.3	2,901,810	5.6
평년	527,158		2,747,889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4.5.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지역별 농지거래 실태 분석’에 따르면 농지 거래에 미친 영향은 금리 인상 요인(76%)이 「농지법」 개정 요인(23%)보다 더 크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 유동성이 LH사태 이전에 비해 감소(약 11%)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자율보다 규제 효과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영향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더 크고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이와 같이 농지규제에 대하여는 식량생산기반 보전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지규제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농지임차인보호

안 제7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임차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77조는 농지의 임대·위탁시에는 안 제77조에서 신설하는 농지관리청을 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농지임차인 등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경작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임차인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위탁하고자 할 경우 농지관리청을 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농지임대차 등의 경우 계약 체결사실을 농지관리청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의 차임청구권(명목에 관계없이 차임 상당 금원청구권을 포함한다)은 효력을 잃는다.
<신 설>	제77조(농지관리청) ① 농지총량관리와 경자유전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둔다. ② 농지관리청은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처분명령, 농지은행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와 관련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농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지관리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2항, 제3항에 필요한 세부 관장 업무의 내용 및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안 제74조는 농지임차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국가기관인 농지관리청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농지법」 제24조 등⁸¹⁾은 임대차 및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을

81) 「농지법」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

두어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등의 농지 임차인 보호 제도를 두고 있음.

[농지 임차인 보호·지원 정책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농지 은행	(공공임대형 농지매입 사업) 농지은행이 우량농지를 매입 한 후, 청년농 등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장기 임대 (임차임대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농지법	임대차 계약의 서면 작성 의무화(법 제24조), 계약기간 자동 연장 및 갱신 요구권(농지법 제26조, 제26조의2)
청년농 지원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 선정자에게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 임차비용을 융자 대출 지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5. 1. 23. 제출)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농지 관련 임대계약서 미작성 관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농지임차인의 어려움이 남아있으므로, 개정안은 농지임차인에 대한 더욱 두터운 보호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농지관리청을 통해서만 임대를 허용하여 농지관리청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에 통지하지 않은 사인 간 임대차계약의 차임청구권⁸²⁾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하는데,

이는 ①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고령화 등으로 농지임대인이 농지관리청 통지제도의 변화를 모르는 경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77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국가기관인 농지관리청을 신설하고 농지총량관리⁸³⁾,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⁸⁴⁾, 농지처분명령⁸⁵⁾, 농지은행사업⁸⁶⁾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국의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실현, 식량자급률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농지관리청의 신설은 농지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는 기초 하에서 관련 행정체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규제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관점들을 종합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조직의 설치로 인한 행정의 비대화 및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약정한 임대료(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 등 수립 등(「농지법」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8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85)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를 처분명령(「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86) 농지 매매·임대차·교환 등, 농지 효율적 이용 및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1개과(농지과)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지정책, 농지은행사업, 농업경영체등록 등 일부 업무를 분리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정책의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농지위원회

안 제78조는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두고 농지의 보전, 취득 및 이용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8조(농지위원회) ① 농지의 보전, 취득 및 이용의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농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농지위원회 제도는 2021년 8월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 시('22.8.18.시행) 마련되었으며,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⁸⁷⁾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음⁸⁸⁾.

87) 「농지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결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후략>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21.8)
농지위원회 설치 (제44조~46조)	<신 설>	•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 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 설>	•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의 “농지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의 설립 근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별법과 동일한 내용을 기본법에 반복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 법률: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88)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사. 제7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8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안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는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먼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안 제85조부터 제92조까지의 13개 조문은 ① “농업인”을 “농민”으로 변경, ② 식품 관련 내용의 삭제, ③ 인용 조문 정정 등 자구정리, ④ 내용 변경없이 조문 위치만 이동하는 내용임.

“농민” 개념 신설과 식품 관련 내용의 삭제는 전부개정안 전체에서 일괄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 살펴본 검토 사항과 같으며, 그 밖에 자구정리 및 조문위치 이동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임.

개정안	주요내용			
	농업인→농민	식품 삭제	자구정리	위치만 이동
제79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	-	●	-
제80조(농업특업재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	●	-
제81조(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	-	-
제82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	-	-
제83조(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육성)	-	●	-	-
제85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	-	-
제86조(농민과 농업법인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	●	-
제87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	-	●	-
제88조(농민 및 농업법인의 정보 등록)	●	-	●	-
제89조(치유농업의 진흥)	-	-	-	●
제90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	-	-	●
제91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	-	-	●
제92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	●	-

다음으로, 안 제84조는 토종종자와 전통 농법 등의 공유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8조(종자권)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려는 내용이므로, 전술한 종자권의 검토내용과 연계하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용수구역 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 국무총리 는 이를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0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 ----- 생산비용----- -----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고령농민 증가 등 농업 인력구조의 변화양상을 반영하고 여성농민의 농업참여를 촉진하며 ----- ----- 기계화(여성이 사

현행	개정안
다.	용하기 적합한 농기계 구조개선을 포함한다)----- -----.
③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u>농업인</u> 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u>농민</u> ----- ----- ----- -----.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u>경영기법</u> , <u>농업인</u>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u>가공·식품</u>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u>농업 및 식품산업</u>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1조(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 <u>관련</u> ----- ----- ----- <u>운영기법, 농민</u> ----- ----- <u>가공기술</u> ----- ----- ----- <u>농업</u> ----- -----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u>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u>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u>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 <u>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u> ----- ----- ----- <u>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u>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u>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u>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u>농업</u> ----- -----.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u>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	제83조(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u>농업·농촌</u> 육성) ① ----- -----

현행	개정안
반한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u>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u>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u> <u><신 설></u> ① 정부는 <u>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u>	----- <u>농업·농촌</u> ----- ----- -----. ② ----- <u>농업·농촌</u>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84조(토종종자와 전통 농법 등의 공유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토종종자를 비롯한 재래종 농업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전통 농법, 농산물의 전통 가공방법 등을 보존하고, 국민 모두가 전통 농법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③ 국가는 새로운 발명에 의한 영농기술·생산방법·가공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등 <u>농업·농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④ ----- <u>농업·농촌</u> ----- ----- -----

현행	개정안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u>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u>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u>생산방법</u>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u>가축분뇨</u>,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u>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u>정보 제공</u>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업경영체</u>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u>경영능력</u>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u> 및 농업의 <u>경영구조</u>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2. (생략) 3. <u>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u> 등을 위한 지원 4. (생략) 5. <u>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u>을 위한 지원 <신설> 6. (생략)	-----. 제85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u>안전한 농산물</u>----- ----- --<u>생산방법의</u> ----- ----- <u>가축분뇨의</u> ----- -----. 제86조(농민과 농업법인의 소득증대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 <u>농민과 농업법인이 지속적인 운영</u> ----- ----- <u>있도록</u> ----- ----- <u>정보제공</u> ----- -----. ② ----- <u>농민과 농업법인</u> ----- ----- <u>운영능력</u> ----- -----. ③ ----- <u>농민과 농업법인의 소득증대</u> ----- <u>구조</u> ----- -----. 1. 2. (현행과 같음) 3. <u>고령 농민의 농업</u> ----- ----- <u>이전</u> ----- ----- 4. (현행과 같음) 5. ----- -- <u>보조</u> 6. <u>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투입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u> 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u>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u>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u>농업인 중</u>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u>농업인</u>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u>실직농업인</u>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u>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u>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u>농업인</u>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업인</u>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u>농업경영체</u>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u>농업 경영</u>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 ----- ----- ----- <u>고령 농민의 농업</u> ----- ----- ----- <u>농민 중</u> ----- ----- <u>농민</u>에 ----- -----. ⑤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실직농민</u>-----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 -- <u>농업생산을 증진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u> ----- <u>농민</u> ----- ----- -----. ② ----- <u>농민</u> ----- ----- ----- -----. 제88조(농민 및 농업법인의 정보 등록) --- ----- ----- <u>농민 또는 농업법인</u>에 대하여 <u>농가구성원, 농업법인 조합원·출자자, 농업노동자,</u> ----- ----- <u>농업</u> ----- -----.

현행	개정안
<u>제43조의2</u>(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u>제89조</u>(치유농업의 진흥) (현행 제43조의2와 같음)
<u>제44조</u>(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u>제90조</u>(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현행 제44조와 같음)
<u>제45조</u>(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u>제91조</u>(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현행 제45조와 같음)
<u>제46조</u>(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u>농업인·농업</u>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u>제45조</u>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제92조</u>(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농민·농업</u> ----- -----. ③ ----- <u>제91조</u> ----- ----- ----- -----.

아. 제9절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 적응

안 제93조부터 제96조는 국가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u>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u>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u>지구온실가스</u>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u>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제93조(기후위기 대응 등) ① ----- -----기후위기 대응 기여 ----- -----온실가스 ----- --. ② -----농업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4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현행 제47조의2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제95조(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국 무총리는 제25조제2항제15호의 농업·농촌 기 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업의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기자재·시설 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업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 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 및 전환 정책 추진에 필요 한 농업·농촌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94조에 따른 지속적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사회 이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각종 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 관련 상시 정보제공 및 정기 교 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순환적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위 각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할당 및 업무배치에 관한 내용 11. 각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농업 · 농촌으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촌 지역에 설치·운용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경우 해당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지를 보전하며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설치·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주민이 그 수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안 제95조는 농업·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촌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도가 높다는 점⁸⁹⁾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기후변화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⁹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⁹¹⁾을 5년마다 수립·

89) 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4)’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기후변화가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88.4%로 2023년 대비 7.1%p 증가함.

특히, ‘폭염, 이상 고온’, ‘폭우,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빈번하였으며, 그 결과로 ‘생산량 변화’(68.2%), ‘영농활동의 어려움’(52.0%) 등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9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시행하고 있고, 농업 등 부문별 영향과 적응 대책,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⁹²⁾

둘째, 안 96조는 농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동의요건을 신설하고, 공평한 수익배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수용도를 높이며, 농촌 주민의 수익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96조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주민동의의 기준, 주민과의 수익배분의 범위 및 기준은 동 개정안의 핵심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전기사업법」⁹³⁾ 및 「신재생에너지법」의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의 원칙은 동 기본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체계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1) 이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6.)에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담기관 설립, 기후적응형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 식량작물의 공공비축 확대, 신규 수자원 개발, 농업생산기반 시설 개선을 통한 홍수 피해 대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92) 또한, 안 제95조의 종합계획은 안 제25조(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되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의 일부인데, 법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두 개의 조항을 별도로 구분하기 보다는 한 개의 조항으로 통합·조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93)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위해서는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따라 주민동의 요건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

또한,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 제10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농촌주민의 권리 보장

1) 조건불리지역 등의 지원

안 제99조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안 제100조는 농촌 지역 산업의 진흥, 안 제102조부터 제10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골재채취, 유해·위험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 제한, 안 제109조는 농촌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안 제111조 의료서비스 확충, 안 제112조는 노인에 대한 돌봄, 안 제113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99조(조건불리지역의 지원) ① ----- ----- ----- ----- 판매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편의 제공, 물·전기·연료 등 생활 필수 에너지 공급 시설 설치, 찾아가는 교육·복지·의료서비스의 시행 등 주거환경의 개선과 거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제100조(농촌 지역 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시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 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u>제10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농촌에 집중되어 농업 여건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발생구역 내 처리 원칙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농민과 농촌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근 주민의 알권리, 가동중지요청권·피해저감조치 및 피해배상청구권 보장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u>제103조(골재채취 허가 제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로 농업 여건 및 농촌주민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접 농지 및 주거지와 이격거리를 둘 것을 골재채취 허가조건으로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재채취로 인한 농민과 농촌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근 주민의 알권리, 채취 중지요청권·피해저감조치 및 피해배상청구권, 복구요청권 보장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04조(산업시설의 환경영향 등으로 인한 농업 및 농촌 피해 예방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또는 농촌 인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이나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생산·사용·운반·보관하는 산업시설 또는 그 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농업 생산이 저해되거나 농촌주민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 유해인자 또는 환경영향과 농업 생산 저해 또는 건강상 위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유해인자 또는 환경변화로 인한 농민과 농촌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의 알 권리, 시설 가동중지요청권·피해저감조치 및 피해배상청구권, 복구요청권 보장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06조(도시농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업·농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u>,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u>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u>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9조(농촌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과 농촌 출신 학생에 대한 지원) ① ----- ----- <u>농촌 지역 학생</u>----- ----- <u>농촌 지역 교육환경</u>----- -----.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출신 학생이 거주 지역 외의 상급 학교에 진학할 경우 주거·생활과 학습을 지원하고, 농

현행	개정안
<신설>	<u>촌 출신 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신설>	<u>제111조(의료서비스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출산, 노인질환, 농약 중독,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한 농촌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신설>	<u>제112조(농촌 거주 노인에 대한 돌봄 체계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인력과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신설>	<u>제113조(다문화가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취업 등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출신국과 교류를 증진하는 등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첫째, 안 제99조는 현행법에 있는 국가 등의 조건불리지역⁹⁴⁾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명시함으로써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임.

94)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

이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영농·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u>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둘째, 안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는 환경·건강 유해시설로부터 농업·농촌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이 도시의 각종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각 내용은 각각 소관 부처별 개별법령에 따라 상제한 규제 및 피해보상 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 ② 골재채취 허가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골재채취법」, ③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는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법」 등이 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해당 내용이 소관 개별법 체계 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책 및 법률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처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 체계를 논의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계 부처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는 각각 소관 법률에 통일성 있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환경부는 안 제102조가 「폐기물관리법」 등⁹⁵⁾ 환경분야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폐기물 발생구역 내 처리 원칙은 현재 정착된 사업장폐기물 처리 기반(운반, 소각, 매립 등) 정책 전체에 큰 영향을 주며, 일부 지역의 폐기물 처리 곤란 등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⁹⁶⁾
- 국토교통부는 안 제103조의 골재채취 허가 제한 내용은 「골재채취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은 중복으로 인한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육상골재채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 고용노동부는 안 제104조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개정안은 산업시설로부터 발생한 유해물질로부터 인근 환경 및 농촌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⁹⁷⁾ 분류체계가 아닌 환경 법령⁹⁸⁾의 유해화학물질을 인용하는 것이 부합해 보인다는 입장
- 환경부는 안 제104조에 대하여 「환경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해 환경유해인자⁹⁹⁾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에 대해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역학조사 실시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후속조치 중이므로, 법률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

9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96) ○ 현재 지역의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은 지자체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적정 처리를 위해 설치하며, 이미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설치·운영 중임

- 지역의 필수 사회기반시설인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로,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지역 성장 및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은 이미 공개 중이며, 지역주민 감시제, 주변지역 주민지원제가 이미 시행 중인 바, 기존 법률 및 제도와 중복됨

97)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은 사업장 내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으로 분류한 것이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것은 아님.

98)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보건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99)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셋째, 안 제10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임.

이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개별법」¹⁰⁰⁾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해당 법률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도시농업의 날 지정 등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137곳에서 제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실익이 높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안 제109조는 농촌 학생들의 교육접근성을 제고하여 도시에 비해 평등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농촌 출신 청소년의 학업 지속성과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안 제109조제2항은 농촌 출신 학생이 거주 지역 외의 상급 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촌 출신 학생이 의미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촌에 거주한 기간 등 농촌 출신의 기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기준을 ① 농어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거나, ② 농어업 종사자 또는 종사자의 자녀 그리고 농업계 학과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¹⁰¹⁾하고 있음.

다섯째, 안 제1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의료·보건 시설 부족은 농촌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확충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의료여건 개선에 대한 의무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¹⁰²⁾에서도 이미 규정하여 입법실익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여섯째, 안 제112조는 농촌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적 대

10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2025년도 모집공고(한국장학재단)

10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인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일반법인 ① 「노인복지법」¹⁰³⁾에 의하여 노인실태조사, 노인 대상 요양·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5조¹⁰⁴⁾는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복지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실익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곱째, 안 제113조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족¹⁰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이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의의가 있어 보임.

103)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0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할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05) ‘다문화가족’은 귀화자 또는 결혼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외국인 가구와는 다른 개념이며, 내국인 가구 중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2024년 기준 농가인구(200만 3,520명) 중 다문화농가인구는 3만 5,319명으로 약 1.8%에 해당하고, 비중의 증감세는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연도	농가인구 (명)	다문화농가인구 (명)	다문화농가인구비율
2021	2,215,498	38,098	1.7%
2022	2,165,626	38,239	1.8%
2023	2,088,781	37,450	1.8%
2024	2,003,520	35,319	1.8%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113조와 안 제110조는 다문화 가족의 정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조항을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안 제113조(다문화가족 지원)	안 제110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 <u>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취업 등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출신국과 교류를 증진하는 등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u>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충분한 복지를 누리며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농 등에 대한 소득 안정, <u>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u> , 고령농민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u>정책을 세우고 시행</u> 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자구정리

안 제97조, 제98조, 제101조,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의 7개 조문은 ① “농업인”을 “농민”으로 변경, ② 식품 관련 내용의 삭제, ③ 인용조문 정정 등 자구정리, ④ 내용 변경없이 조문 위치만 이동하는 내용임.

“농민” 개념 신설과 식품 관련 내용의 삭제는 전부개정안 전체에서 일괄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 살펴본 검토 사항과 같으며, 그 밖에 자구정리 및 조문위치 이동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임.

개정안	주요내용			
	농업인→농민	식품 삭제	자구정리	위치만 이동
제97조(농촌 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	-	●	-
제98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	-	-	●
제101조(농촌주민 등에 대한 교육)	-	-	●	-
제105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	-	●
제107조(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	-	-	●	-
제108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	●	-
제110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u>농촌지역</u>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7조(농촌 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 ----- ----- <u>농촌 지역</u>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u>농촌지역</u>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u>농촌 지역</u> ----- ----- ----- -----.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8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현행 제49조와 같음)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u>소득을 높이기 위하여</u>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1조(농촌주민 등에 대한 교육) ----- ----- <u>발전을 높이기 위하여</u> ----- ----- -----.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	제105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u>농촌지역</u>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u>농촌지역</u>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u>농촌지역</u>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u>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u>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2. <u>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u>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u>농업·농촌</u>	<u>제107조(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u> ① ----- <u>농촌 지역</u> ----- -----. ② ----- ----- ---- <u>농촌 지역</u> ----- -----. ③ ----- <u>농촌 지역</u> ----- ----- -----. <u>제108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u> ① ----- ----- <u>농업·농촌</u>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87조제2항에 따른 농민</u> ----- ----- -----

현행	개정안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 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 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 농업·농촌 ----- ----- ----- ----- ② ----- ----- ----- ----- ----- ----- ----- 요청받는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촌주민의</u>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u>영세농업인</u> 등에 대한 소득 <u>안정화</u>,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u>농업인의</u>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0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 <u>농촌주민이 충분한 복지를 누리며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u> ----- ----- <u>소농</u> ----- ----- <u>안정</u>----- <u>농민의</u> ----- ----- -----.

차. 제11절 통일 대비 농민·농업·농촌 정책과 국제협력

1) 농업 부문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등

안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는 남북 농업협력 및 농산물 교류, 농업 부문 통상정책,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15조(남북 농업협력 및 농산물 교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주민의 식량권 보장을 위하여 남북 농업협력을 확대하고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교류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116조(농업 부문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 부문 통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 부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에 부담을 전가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부는 농업 부문 주요 통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농민과 농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관련 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농업 부문 통상조약 체결 시 농민·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 ①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농업·농촌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결과와 달리 특정 품목 재배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8조(농민·농업·농촌 분야의 국제협력) ① ----- 농민·농업·농촌 분야----- ----- - 농민·농업·농촌 정책----- ----- 농업 ----- ----- -----. ② ----- 사료 ----- 위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민·농업·농촌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안 제115조는 국가 등으로 하여금 남북 농업 협력¹⁰⁶⁾ 및 교류 증진 의무를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남북 농업협력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① 정부 등의 농업협력 및 교류를 확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부로 하여금 북한을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분야별 개별법에서 다루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 주민 관련 사항의 법률 명문화는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외교적·정치적 맥락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안 제116조 및 제117조는 정부가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면서 식량주권 실현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업·농촌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농민을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권익 증진, 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고,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업 및 농촌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농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106) 1995년 북한의 국제사회에 경제위기 및 식량난에 대한 지원 요청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식량지원과 농업 분야의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남북 간의 유의미한 교역은 현재 중단된 상황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상정책이 특정 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는 「통상조약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셋째, 안 제118조는 정부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수입선 다변화 정책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국제 곡물시장 불안이나 돌발적 수출 제한 조치 등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이와 관련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2조¹⁰⁷⁾에서 수입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정안이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간 충돌 및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대체수입 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2.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3.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등 비용 절감
4.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개량,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개량
5. 수출제한 조치 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품목등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구정리

안 제114조, 제119조, 제120조의 3개 조문은 ① “농업인”을 “농민”으로 변경, ② 식품 관련 내용의 삭제 등의 이 법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구정리 내용임.

“농민” 개념 신설과 식품 관련 내용의 삭제는 전부개정안 전체에서 일괄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 살펴본 검토 사항과 같으며, 그 밖에 자구정리 및 조문위치 이동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114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등의 조사·연구) ① ----- ----- -- 운영지도, 농민 ----- -----.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농업·농촌 ----- -----.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9조(농산물의 수출 진흥) ① ----- ----- 농산물의 수출 진흥 -----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농민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 -----.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0조(농산물의 수입 관리) ----- - 농산물 ----- ----- 농민·농업·농촌 ----- ----- ----- -----.

5.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등(안 제5장)

안 제121조 및 제122조는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개정안 체계에 맞게 자구정리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의 내용을 유지하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과 같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농촌 분야의 정보화 촉진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입법조치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u> <u>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u> (이하 “ <u>농정원</u>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21조(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 <u>농민의 육성, 농산물·농촌</u> ----- ----- ----- ----- <u>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u> ----- -----.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
1.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u>	1. <u>농업·농촌</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u>	3. <u>농업기술수준</u> ----- --

현행	개정안
4.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u>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생략) 6.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u> 분야의 통상 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u>농림수산물</u>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생략)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제63조의2</u>(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u>제63조제2항</u>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③ (생략)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u>제63조제2항</u>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생략) 3. <u>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u>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 7. (생략) ⑥·⑦ (생략)	4. <u>농업·농촌</u> ----- 5. (현행과 같음) 6. <u>농업·농촌</u> ----- 7. <u>농림수산</u> ----- 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u>제122조</u>(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 <u>제87조제2항</u>에 따른 <u>농민</u>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u>제87조제2항</u>----- 2. (현행과 같음) 3. <u>농업재해재보험기금</u> ----- 4.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6. 보칙(안 제6장)

안 제123조 및 제125조는 ‘준농촌에 대한 지원’, ‘조세의 감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내용을 유지하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현행	개정안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3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62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4조(조세의 감면) ----- --농민·농업·농촌----- ----- ----- -----.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제94조제5항----- ----- ----- -----.

문의처

02)6788-5417